
2021년도

입사생(남자) 추가 선발요강



**(재) 경기도민회 장학회
경기푸른미래관**

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(남자) 추가 선발요강

1. 목 적

경기도의 대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식 면학환경을 제공하여 장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,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
2. 근 거

-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, 제6조
-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3조
- 경기푸른미래관 운영규정 제9조부터 제19조

3. 선발예정 인원

- 남자 예비후보자 : 000명 (중도 퇴사생 충원을 위한 상당수 인원)
※ 중간입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사대기후 대면수업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후 입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4. 입사 자격

- 거주 :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님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
- 학교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학생
- 재학 : 2021학년도 대학교 재학생 · 2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
※ 재입사 : 푸른미래관 재사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, 교환학생, 신병치료의 사유로 휴사 하였다가 다시 입사하고자 하는 대학생

5. 입사자격의 제한

-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학생
- 전염성질환 · 정신질환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학생
 - 전염성질환(B형간염, 결핵, 코로나19 확진자 등) · 정신질환(조현병, 뇌전증[간질] 등)
- 입사 후 직권으로 퇴사조치된 학생
- 푸른미래관에 입사한 후 병역의무, 교환학생, 신병치료의 사유를 제외한 임의로 퇴사한 학생

6. 입사지원서 온라인 접수 (우편 · 방문접수 불가)

○ 기 간 : '21. 7. 12 ~ 7. 20 (9일간)

- 접수일시 : 7. 12(월) 10:00 ~ 7. 20(화) 19:00

※ 주말과 야간에도 접수(신청)는 가능하나, 신청문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○ 방 법

- 경기푸른미래관 홈페이지 접속 - www.gbfh.co.kr
- 지원서 접수 : 경기푸른미래관 홈페이지 내 입사생 선발 메뉴

※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(여러장일 경우에는 알집으로 압축하여 올려주세요)

7. 선발 구분 및 평가방법

○ 우선 선발 : 다음의 1에 해당할 경우 우선 선발함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
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

○ 신규입사 : 평가 다득점에 따른 경쟁선발

- 평가요소 : 가정소득*(100%) + 가산점*

* 가정소득 : 2020년도 부·모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액 연간 합계

* 가산점(해당 사항 중복가산)

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탈북주민 자녀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정, 원거리

○ 예비 후보 : 중도 퇴사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남녀별 평가순위에 따른 상당수 인원을 예비 후보로 선발함

○ 재 입 사 : 재입사는 재사연장의 일환으로 평가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입사가 불허됨

- 본인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
- 정학, 퇴학 등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경우
- 학적변동으로 서울시,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생이 아닌 경우
-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
-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C학점에 미달하는 경우
- 휴사 신청 당시의 휴사 사유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

8. 입사지원 구비 서류

구 分	구 비 서 류	비 고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사원서 또는 재입사원서 (온라인 작성) •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온라인 작성) •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(주소이력 포함) • 재학(복학예정·휴학)증명서 	각 1부
우선 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(부·모 또는 본인) •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사실 확인서(본인) •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사실 증명서(본인) 	해당 항목 1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사항이 전부 기록된 것) 	
재입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직전학기) 성적증명서 -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발급분 	1부
신규 입사	<p>필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: 부·모 각각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·모 각각 가입한 경우 : 부·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- 부·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: 가입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미가입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- 부·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: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-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(홈페이지, 팩스, 방문 발급), 민원 24 ※ 수급자,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 	각 1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〈가족사항이 전부 기록된 것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부, 편모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	1부
가산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증명서(부·모 또는 본인) • 한부모가정증명서(부·모 또는 본인) • 장애인증명서(중증장애인[기준 3급] 이상, 부·모 또는 본인) • 국가유공자증명서(부·모 또는 본인) 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부·모 또는 본인) •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(개명을 했을 경우) 	해당 항목 1부

9. 선발결과 발표 : '21. 7. 30(금) 경기푸른미래관 홈페이지

10. 재사 기간 및 비용 부담

- 재사기간 : 입사제한 사유 및 퇴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졸업 또는 수료시까지
- 입사금 및 시설이용부담금 : 최초 등록시 입사금(5만원), 부담금(식비 포함) 15만원(월)

11. 참고 사항

-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, '세부 작성 안내(입사신청 가이드)'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한 후 접수하기 바랍니다.
- 입사 신청서 허위작성 및 제출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자는 입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며 제출서류의 상태가 확인 불가(불충분)의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합니다.

※ 문의처 : 02-996-8505, 02-996-1003 (내선 1번)